

#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공고 안내

## 1. 공급개요(입주자 모집공고)

- 아파트명 : 내포 e편한세상 퍼스트드림
- 공급 위치 :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7
- 공급 일정 : [입주자 모집공고] 2024.11.01(금)(예정)  
[특별공급 청약접수] 2024.11.11.(월)(예정)
  - \* 분양일정 및 공급내역은 인·허가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추천 배정 세대수 : 9세대(괄호 안의 수는 예비자 수 : 500%적용)
  - \* 예비추천자수는 시행사와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

구분	주택 유형		계
	84A	84B	
추천(예비)	7(35)	2(10)	9(45)

- 기관추천 신청기간 : 2024.10.17(목) ~ 2024.10.19(토) 18:00까지
- 추천대상자 발표 : 2024.11.5(화)

## 2. 대상요건

- (1)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, 중소기업기본법\* 제2조에 따른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  - \* 제외업종 :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
- (2)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만 1년 이상 재직 기간을 합해 5년(또는 동일한 중소기업 근무한 경우에는 3년)이상인 자
- (3)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(대표자 및 법인 임원\* 제외)
  - \* 다만, ①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) 재직 ②고용보험 가입 ③실질적 근로 제공 (급여수령)시 이사 및 감사는 신청 가능
  - \* 이사 경력은 '13.3.1 우선공급대상 지침 개정전'은 주택우선공급 대상이 아니므로 **근무기간 불인정.**
- (4)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
  - \*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,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
- (5) 충남지역 거주자이며, 지역·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(종합저축, 청약저축) 가입 요건을 충족한 자(시행사 안내문 참고)

### 3. 특별공급 청약신청 안내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

\* 접수 방법 :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<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>)  
→ 알림마당 →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→ 해당 공고명 검색 및 신청

\*\*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, 신청대상 요건 확인 및 증빙자료 사전 제출 필수

□ 신청서류 : 첨부파일 안내문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안내되어 있음  
(기간 내 온라인 업로드 필수)

□ 신청취하 : \*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, 취하 번복은 불가함

\*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→(상단)신청관리→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신청조회에서 신청취하

\* **입주자 모집공고일(2024.11.01) 후 +2일 이내(18시까지)만 취하 가능(주말포함)**

□ 추천자 선정 :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천

□ 추천자 발표 : **2024.11.5.(화)**, 추천자와 예비자에 한하여 문자안내

※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주택형별 고득점순으로 추천하며, 발표일정은 시행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4. 유의사항

□ 본 공고는 「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추천함

□ 신청기한 이후에는 신청접수 불가, 가점 항목 미선택 및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 불가 (특별공급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한을 반드시 준수)

※ **가점항목 및 제출서류, 내용, 기준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 요망**

- 청약자격 요건은 신청자가 확인하여야 하며, 추천 후 청약자격요건 불충족 등 사유에 따른 미청약 시 감점사유에 해당함

※ **무주택, 청약조건(청약예금 등), 분양가, 분양일정 등 관련사항은 시행사에 문의**

-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
※ **중소기업 재직여부 및 기업규모 판단 불가능 시, 대상요건 및 재직기간 점수 불인정**

\* 사업자등록번호는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소득자용)을 참고하여 기재(세무서 또는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)

- 재직기간 입력시 현직장 근무 종료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입력
-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,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 이 아닌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
- 신청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‘청약자격 확인-주택소유 확인’ 을 통해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

\* 무주택 판단기준 및 청약제도 제반 사항 문의 : 국토부 민원 콜센터(1599-0001)

\*\* 제출서류가 아닌 확인사항임

- 특별공급 추천시 시행사로 추천서를 직접 발송하므로 개별 추천서를 발행하지 않음
- 주민등록법령 위반, 제출서류의 위조 또는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추천 취소
- 특별공급 대상자는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일에 ‘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’ 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(미신청시 추천자에서 제외되어 계약 불가)
- 아파트 모집공고문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,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신청기간, 배정세대 등 공급 내용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
- 추천 후 미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향후 1년 내 신청 -10점 감점, 1년 초과~2년내 신청 -5점 감점 (단, 입주자모집공고 후 2일이내 신청 취하서 제출시 제외)  
(ex : (3/31) 금요일 입주자 모집공고시, 신청취하서를 (4/2)일요일까지 제출)
-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, 부부가 중복 신청할 경우 청약 접수일(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한다. 이하 같음)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. 이 경우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.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)

□ 기타 세부사항은 「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-71호(2023.1.1.시행))」, 운영매뉴얼,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 참고

※ 문의처

기관추천	041-415-0608	청약, 무주택 요건	1644-7445, 1599-0001
시행사	041-977-2600	시스템오류	1661-7616

◆ 서류는 신청기간 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대상자 요건 확인 등이 불가하여 신청 제외, 자격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.

(가점증빙 포함 모든 제출 서류는 2024.10.17.(목)-2024.10.19.(토) 기간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, 이전서류 제출시 통보없이 탈락처리되며 신청기간 이후에 보완불가  
※ 단, 법인등기부등본(3개월 내), 사업자등록증은 발급기간 예외

## □ 기본 제출서류

1. 주민등록등본 1부(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)
2. 사업자등록증명 1부
3. 법인등기부등본 1부(말소사항 포함, 임원에 관한 사항 포함)
  - \*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미제출시 인정불가, 근로자도 제출필요!! / 현재유효사항포함x
  - \*\* 예외조항 : 신청자가 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등본상 이사로 등재시, 법인등기부등본, 4대보험가입내역서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추가 제출
4. 중소기업확인서(과거 기업도 해당되며, 폐업 등 중소기업 확인불가시 불인정)
5.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· 주택우선공급 서약서 ·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
  - \* 시스템 신청서 작성 시 양식이 첨부되어 다운가능함.
  - \* 행정정부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시 신청자 및 회사 직인 모두! 필요
6.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서 \*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[www.4insure.or.kr](http://www.4insure.or.kr)
7.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\*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[total.comwel.or.kr](http://total.comwel.or.kr)  
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\* 국민건강보험 [www.nhis.or.kr](http://www.nhis.or.kr)
- ☞ 이전 직장경력이 있을 경우 직장경력 내역이 나오게 발급받을 것  
(내역에 없을시 근무경력 불인정)
8. 가족관계증명서 1부

## □ 가점 서류

1. 제조소기업 재직근로자 : 현직장의 중소기업확인서(소기업, 업종 : 제조업) 또는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(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)
2. 뿌리산업종사자 : 공장등록증명서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, 뿌리 기술평가확인서,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중 택 1
  - \* 뿌리산업의 범위 확인 :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內 뿌리기업 전문기업 지정 → 뿌리산업의 범위(<https://www.root-tech.org/certification/guide02.php>)
  - \*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참고
3.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: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(연구개발인력 현황 포함) 또는 연구전담부서인증서(연구개발인력 현황 포함) 1부
  - \*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
4. 우수숙련기술자 : 「숙련기술장려법」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증서 또는 숙련기술자전수자 증서, 우수숙련기술자증서 中 택1
5. 성과공제기금\* 5년 만기자 : 내일채움공제 만기증서(중기부)
  - \* 성과공제기금 : 중소벤처기업부만 해당. (고용노동부는 해당없음.)
6.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자 : 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
  - \* Q-Net 발급 가능하며, 화면 캡처는 인정하지 않음
7. 수상경력 : 개인자격으로 수상한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(상패 등은 사진 사본으로 제출) \* **최초 중소기업 입사일이후부터 수상인정.**
8. 미성년 자녀(만 19세 미만) :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임신확인증 1부 (태아의 경우)
9. 주택건설지역 재직 : 주택건설지역 소재(시·군) 또는 주택의 건설 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 재직

10. 무주택기간 : 지방세 미과세증명서(세대구성원 전원, 15년간 전국단위)

\*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재산세(주택)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, 건물등기부등본 추가 제출(매각일자 활용)

\*\*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, 온라인 신청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정보와 무주택기간을 정확히 입력

<p>※ 무주택기간 증빙서류 발급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물등기부등본 : 무인발급기, 등기소,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</li> <li>- 건축물관리대장 : 구청, 동 주민센터, 무인발급기, 정부24 홈페이지</li> <li>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: 구청, 동 주민센터, 정부24 홈페이지 발급가능</li> </ul>	
---	--

※ 무주택 산정기준

과거 주택소유여부	만30세 이전 혼인여부	무주택기간
<p><b>무주택자</b> (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음)</p>	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음	만 30세가 된 날~입주자모집공고일
	신청자 본인이 만30세 이전에 혼인함	혼인신고일~입주자모집공고일
<p><b>과거 주택소유</b> (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다 매도하였음)</p>	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음	①만30세가 된 날, ②무주택자가 된 날 ① 또는 ② 중 늦은날(최근) ~입주자모집공고일
	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함	①혼인신고일, ②무주택자가 된 날 ① 또는 ② 중 늦은날(최근) ~입주자모집공고일

□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증빙자료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」)

- (제1호)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결과서류,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,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상속 여부 확인서류
- (제2호) 국토부 '씨리얼'\*에서 면의 도시지역 여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, 신청자의 초본, 기본증명서

\* 씨리얼 홈페이지 : seereal.lh.or.kr

- (제3호)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업종이 '주택판매' 또는 '분양' 목적으로 기입되어야 하고, 분양을 완료(소유권 이전) 결과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필요

- (제4호) 현재 받아야 하는 서류는 별도로 정리되지 않음
- (제5호) 건축물관리대장(면적), 분양계약서(전용면적)
- (제7호) 폐가 사진, 공과금 증빙(물, 수도, 전기 등 사용 내역 없어야 함), 멸실신고에 따른 멸실등기
- (제8호) 신청자 본인이 질의하고 지자체로부터 회신받은 자료
  - \* 건축물이 위치한 지자체 관련 부서로부터 해당 주택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
- (제10호)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분양된 주택의 분양정보 및 주택 형별 경쟁률,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의 실거래 신고서 제출